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명	거주지	
	사용자 대표	성명: (☎ - -)	
신청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사용시설	사용예정인원	총명
	사용목적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단체)는 사용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민원 등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용 중 발생한 파손 또는 훼손은 사용자(단체)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회사 자체행사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연구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라.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거짓 진술, 부실한 서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마. 연구원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바. 연구원이 타인의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 시설관리상 필요한 관리직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 아. 기타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연구원이 요구하는 경우
4. 사용자는 시설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가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정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공사는 해당 물품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시설물 내에 흡연, 음주 및 일체의 음식물(커피 등 음료 일체 포함) 반입이 금지되며, 이로 인한 오염 발생 시 사용자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 홍보물은 관계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행사종료 후에는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하여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별도 구입)
8. 미성년자, 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시설물 사용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사용하며, 연구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물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용자(단체)는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귀하